법계법

제 1조 (목적)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거 출가중의 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의의, 책임) ①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다.[불기2559(2015). 11. 04 개정]
② 모든 법계품수자는 종단책무와 사회교화를 감당할 책임을 가진다.

제 3조 (위계서열) 승려의 위계서열은 승랍순으로 하며, 동 승랍의 경우, 법계 급수 및 품수 순위에 따른다.[불기2559(2015). 11. 04 본조 개정]

제 4조 (법계품서) ① 법계품서는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종정이 행한다.
② 법계품서식은 법계위원장의 요청으로 종정이 행한다.[불기2558(2014)년 6월 25일 개정]

제 5조 (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등) ① 법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는 비구 법계 심사는 9인의 법계위원으로, 비구니 법계 심사는 12인의 법계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<개정 불기 2569(2025).03.26>
② 위원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사 이상 비구 9인,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불기 2569(2025).03.26>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<불기 2555(2011).3.10 개정>
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**1회에 한하여 중임**할 수 있다.
<불기 2555(2011).3.10 개정>**[불기2569(2025).09.10 개정]**
⑤ 삭제<2013.3.20.>
⑥ 위원회는 각급 법계의 품서, 특별전형, 포상법계, 법계무효 등을 관장한다. 단, 비구니 법계위원의 직무는 명사 특별전형 심사에 한 한다.
<개정 불기 2569(2025).03.26>
⑦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부에서 담임한다. <개정 불기 2569(2025).03.26>

제 6조 (회의) ① 회의는 총무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의 일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③ 특별전형 및 포상법계, 법계무효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조 (종별) 법계는 다음의 각 호의 종별로 한다.
1. 비구법계
가. 대종사
나. 종사
다. 종덕
라. 대덕
마. 중덕
바. 견덕
2. 비구니법계
가. 명사
나. 명덕
다. 현덕
라. 혜덕
마. 정덕
바. 계덕

제 8조 (전형방법) ① **대종사 법계는 이 법 제9조 및 제12조의3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 품수한다. 다만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승려는 자동품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계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대종사**

법계를 품수한다.

② 종사 법계는 특별전형으로 한다.

③ 종덕·대덕·중덕·견덕 법계는 고시전형으로 한다.

④ 삭제

⑤ 비구니법계의 전형 또한 비구 전형에 준한다.

제 9조 (기본자격요건) 법계를 품서받고자 하는 자는 결계록에 등재되고, 다음의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[불기2552(2008). 3. 20 개정]

1. 비구법계[불기2563(2019).3.27.개정][불기2565(2021). 9. 10 개정]

법계명	승납	자격요건
대종사	40년이상	종사법계 수지자
종사	30년이상	종덕법계 수지자
종덕	25년이상	대덕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
대덕	20년이상	중덕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
중덕	10년이상	견덕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
견덕	10년미만	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

2. 비구니 법계 요건은 비구법계에 준한다.

제10조 (품서제외) 승려법상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중인 자는 법계품서에서 제외한다.

제11조 (고시전형) 승가고시법에 의한 고시를 거쳐 합격한 자에게는 각급 고시에 해당하는 법계를 품서한다.

제12조 (특별전형) ① 대종사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년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심사하여 선정하고,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[불기2563(2019). 3. 27. 개정] [불기2564(2020). 7. 23. 개정] [불기2566(2022). 3. 28. 개정]

② 종사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[불기2563(2019). 3. 27. 개정] [불기2564(2020). 7. 23. 개정]

③ 삭제 [불기2563(2019). 3. 27. 삭제]

제12조 (특별전형) ① **<삭제>**

② 종사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삭제

제12조의2 (특별전형의 절차) ① 계·정·혜 삼학에 능통하거나 종단공헌이 현저한 승려중 제9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승려는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하여 교육부로 접수한다. 다만,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에는 직할교구사무처로 신청한다. <개정 불기 2564(2020).07.23, 불기 2565(2021).09.10, 불기 2569(2025).03.26>

1. 법계지원서
2. 수행이력서
3. 서약서
4.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5. 자필 유언장 1부
6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

③ 삭제 <불기 2565(2021).09.10>

④ 교육부는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법계위원회에 대상자 심사 및 선정을 요청한다. <신설 불기 2564(2020).07.23, 개정 불기 2569(2025).03.26>

[본조신설 불기 2563(2019).03.27]

제12조의3 (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)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3 (**대종사 법계 자동품수 자격**) 대종사 법계 **자동품수**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총무원장, 중앙종회의장, 호계원장, 교육원장, 포교원장을 재직한 경력
2. 원로의원, 법계위원, 계단위원을 재직한 경력
3. 전계대화상, 총림 방장을 재직한 경력
4. 교구본사 주지를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<개정 불기 2565(2021).11.10>
5.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
<개정 불기 2565(2021).11.10>
6. 중앙종회의원을 6년 이상 재직한 경력 <개정 불기 2565(2021).11.10>
7. 초심호계원장 3년 이상, 호계위원을 6년 이상 재직한 경력
<개정 불기 2565(2021).11.10>
8.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3년 이상, 위원을 6년 이상 재직한 경력 <개정 불기 2565(2021).11.10>
9.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15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<개정 불기 2565(2021).11.10>
10. 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<개정 불기 2565(2021).11.10, 불기 2569(2025).03.26>
11.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<개정 불기 2565(2021).11.10>
12. 말사주지를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<개정 불기 2565(2021).11.10>
13.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본말사에서 10년 이상 염불, 주력 등의 수행을 한 경력 <신설 불기 2565(2021).11.10>
14.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산하기관,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<신설 불기 2565(2021).11.10>
15. 문화·인권·노동·복지·환경·평화 등 대사회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 <신설 불기 2565(2021).11.10>
16. 위 4~14호의 이력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종사 <신설 불기 2565(2021).11.10>

[본조신설 불기 2564(2020).07.23]

제13조 (포상법계 및 법계추서) ① 중덕 이상 법계에 한하여 중앙종무기관의 장 또는 고시위원장의 포상법계 제의가 있는 때 해당법계를 품서할 수 있다. 다만 포상법계는 차상급을 초과할 수 없다. [불기2563(2019). 3. 27 개정]

② 입적하신 스님들에 한하여 재적교구본사 주지의 추천과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법계추서를 할 수 있다. [불기2563(2019). 3. 27 신설]

제14조 (품서의식) ① 위원장은 법계를 품서할 때 법계산림을 개설할 수 있다. [불기2563(2019). 3. 27 개정]

② 법계품수자에게는 법계증서와 가사를 교부한다. [불기2563(2019). 3. 27 개정]

③ **<삭제>**

제15조 (법계무효) 법계품서에 있어 제반 요건을 판단하는 자료에 부정 또는 허위가 발견 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미 수여 한 법계를 무효처분 한다.

제16조 (임시법계) ① 종단의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할 때는 특정 승려에게 임시법계를 품서할 수 있다.

② 임시법계의 효력은 특별임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한한다.

③ 임시법계는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시행하며, 진서되지 아니한다.

제17조 (종령)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.

부칙 [불기2545(2001). 9. 6 전면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이 법 적용의 예외)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품서된 법계와 이 법 시행 이전 및 시행 당시 종법에 의하여 법계가 요건으로 규정된 직위를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당 법계를 품서한 것으로 한다.

② 이 법 시행 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미·사미니계를 수지한 후 구족계를 수지한 자는 이 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, 이 법 제9조의 승납 요건이 충족되면 종사 이하의 법계까지는 해당 법계를 자동 품수한다.

제3조 (최초 법계위원의 선출)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법계위원은 이 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일부터 1월내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.

부칙 [불기2552(2008). 3. 20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불기2545(2011). 3. 10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전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부칙 [불기2557(2013). 3. 20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불기2558(2014). 6. 25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불기2559(2015). 11. 4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불기2563(2019). 3. 27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불기2564(2020). 7. 23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불기2565(2021). 9. 10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본법 제9조 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, 대종사 법계 자격요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'연령 70세 이상인 종사법계 수지자'로 한다.

부칙 [불기2565(2021). 11. 10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불기2566(2022). 3. 28. 개정]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불기 2569(2025).03.26 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불기 2569(2025).09.10 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불기 2569(2025). 11. 5 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